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9378
등록일자	2016.4.27.
결재일자	2016.4.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센터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정현	배경숙	옥종식	전결 04/29 이창훈		
협조자					

- 재난없는 동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

2016년도 동청사 안전관리 계획

■ 추진방향

-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불의의 재난 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 예방대책 : 재난위험시설은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
- 대비대책 :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 대응대책
 - 긴급구조 및 수습체계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사고수습
 -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대책본부장-행정국장/ 상황 실장-자치행정과장
- 복구대책 : 응급복구, 사고원인 조사, 피해배상(보상) 대책, 재발방지 대책

■ 행정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대비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상·하반기 연1~2회
- 재난 안전관리 총괄 및 재난대책 업무 지원 : 재난안전과

2016. 4 . .

강 남 구
(자 치 행 정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 25조 • 2016년 강남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재난안전과-7301(2016. 4.1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재난없는 안전 강남 구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 강남구 세입세출예산서 P605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청사 내방민원 및 공무원, 청사 인근 주민 등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O)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각 자치구 전부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2016년도 동청사 안전관리 계획

제1장 총괄

1.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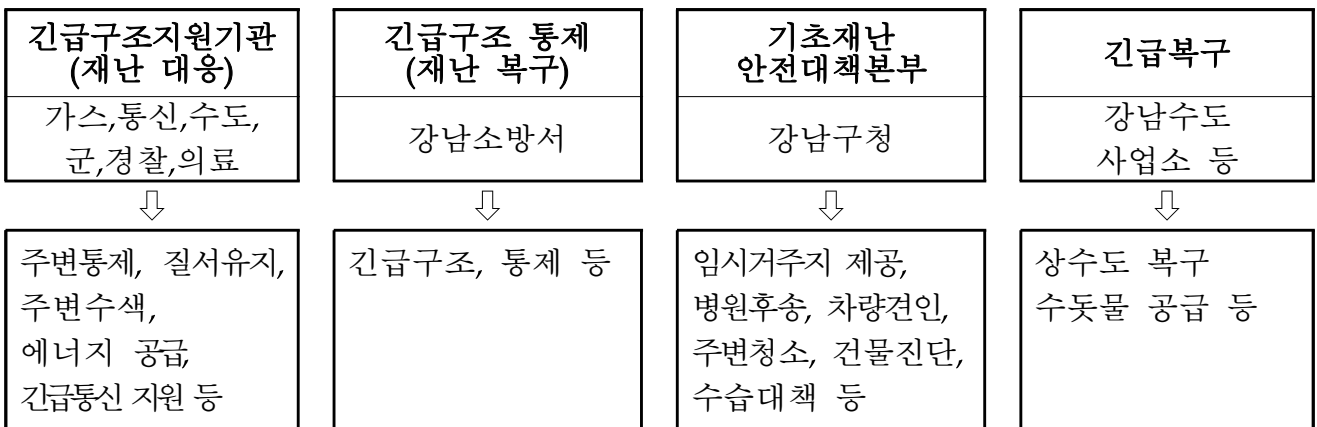
각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청사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능동적인 재난예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청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
-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불의의 재난 사태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3. 재난·안전관리 대응 체계

○ 강남구 재난대응 체계



○ 유관기관 협조 체계

- 인명구조 : 긴급 구조 및 구호 요청
112(경찰), 119(구조대 및 구급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사고현장 질서유지 : 공조협의기관 인력동원 긴급 요청
(인근 경찰서, 군부대, 민방위대, 소방서 등)
- ※ 붙임 유관기관 연락망도 참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1.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가. 목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중점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 및 장·단기 위험성 해소대책 추진, 취약시기별 중점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예방 능력 제고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동청사 안전관리

1-1. 예방대책

1)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관리(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

○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현황(2015년도 안전등급별 현황)

구분	관리대상 시설물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B	C	소계	D	E
동청사	22	22	17	5	-	-	-	-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 2016년 상·하반기 연1~2회 실시
-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 : 시설비 반영
- 재난위험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

1-2. 대비대책

1)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 중점관리시설(A~C급)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신사동 등 22개 공공청사)
- 재난위험시설(D, E급) : 긴급히 보수보강과 사용 및 거주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해당 없음)

※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기준

안전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2) 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분야 및 점검자

- 건축분야 : 건축사
- 전기분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 가스분야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분야 : 소방관련 시설물 자격자
- 기계분야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3)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우기 및 동절기에 대비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
 - ☞ 특정관리대상시설(압구정, 일원본, 일원1, 일원2, 수서동, 논현2동, 청담동)
- 동청사 안전점검 실시(특정시설 포함): 중점관리시설(A~C급)은 연1~2회 이상, 재난 위험시설(D, E급)은 월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1-3. 대응대책

〈 중 점 대 책 〉

- ◆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구축
- ◆ 붕괴 등 재난 유형별로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
- ◆ 효과적인 복구대책 강구 및 피해주민 지원

1) 긴급구조 및 수습체계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사고수습
 - 인명구조 : 시설물 붕괴 등 인명의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긴급 구조 및 구호 요청
【112(경찰), 119(구조대 및 구급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02-2100-5500)】
- 사고현장 질서유지
 - 사고현장 책임기관 자체 인력 우선동원
 - 공조협의기관(인근 경찰서, 군부대, 민방위대, 소방서 등) 인력동원 긴급요청
- 사상자 구조
 - 자체인력으로 우선 긴급구조 활동 전개
 - 공조협의기관(인근 경찰서, 군부대, 민방위대, 소방서 등) 인력동원 긴급요청
 - 긴급구급기관(의료시설)에 사상자 구급 및 후송 요청
 - 실종자·매몰자 등 탐색구조

2)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대책본부장 : 행정국장
- 상황 실장 : 자치행정과장

○ 운 영

- 사고 발생시 규모와 피해예상 정도에 따라 수습대책 수립
- 사고의 전과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각 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 수행

○ 반별 업무분장(붙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참조)

총괄반	수습반	지원반
▶ 상황실 운영 및 지원, 사고방지대책 종합추진, 유관기관 보고 및 협조체계 구축	▶ 사고발생 상황파악, 사태별 대책지시, 각종 상황기록 유지	▶ 사고발생 우려지역 점검, 사고수습활동지원, 사고예방 홍보활동 지원, 사고수습에 필요한 장비지원
자치행정과장, 문화센터팀장, 행정6급 양한성, 행정7급 윤정현, 행정7급 이주현	동행정팀장, 행정7급 이동진, 행정7급 백승재, 행정8급 박은정, 행정8급 홍성미, 행정9급 정은정	주민지원팀장, 행정6급 김혜영 행정7급 이시영, 행정7급 이은희, 행정7급 진나영, 행정7급 임정빈, 행정8급 박지혜

※ 재난발생 시 우선신고 : 재난안전과(3423-6941) 및 구청 상황실(3423-6003)

119신고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황수신

3) 홍보·보도 대책

○ 긴급구조 활동 상황의 보도·안내

- 취재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 취재단 구성 운영 등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

○ 주민 홍보대책

-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 등 긴급한 사항 홍보 필요시에는 사고개요 및 협조사항만 우선 보도 요청
- 필요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협조사항 등 적극 홍보

1-4. 복구대책

1) 응급복구

-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 복구장비, 인원, 자재소요 파악 및 복구방법 결정
-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출동
- 조속한 응급복구 시행
- 사고 잔재물 수거처리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피해확산방지 협조요청

2) 사고원인 조사

- 합동조사단을 구성 현장 조사·점검하여 사고원인 규명
 - 건축과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중대한 사고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에서 조사 실시
- 정밀안전진단, 안정해석 등을 통한 복구대책 수립
- 증거보존 자료의 수집
 -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사고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 촬영
 - 필요한 경우 출입통제 등의 조치 시행
 -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증거물 보존 등 사고현장 조사에 관한 협조지원 요청

3) 피해배상(보상) 대책

- 재난발생 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피해상황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책임소재 분석배상(보상) 책임자 규명(필요시 구상권 행사)
- 배상(보상) 기준의 설정
- 사망자 배상(보상) 계획 수립 : 유족 및 피해자 대표단과 보상 협의

4) 재발방지 대책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나. 추진체계 및 일정

- 2016년 상·하반기 1~2회 안전점검 실시 : 2016년 4월 및 9월
-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시행 : 2016년 5월
- 대치4문화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 2016년 6월

제3장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1.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남구청 재난안전대책 본부

나. 지원기관 : 유관기관(강남소방서, 수서경찰서 등) 및 지원부서 등

2.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가. 유관 기관별 담당팀

부서(기관)	팀명	연락처	임무	비고
강남경찰서	경비과	3497-3045	현장질서유지 및 통제	
수서경찰서	경비과	2155-9261	"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567-0119	화재진화,구조구급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	배전운영실	2105-8268	전력 공급 및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검사2부	2038-3800	가스 시설복구	
코원에너지	상황실	3410-8119	도시가스 차단 등	
LP가스(조합)	총무과	2226-9568	LP가스 조치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점검부	3404-3910	전기 시설복구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3146-4840	수도시설 복구	
KT 강남지사	리텐션1팀	508-2299	통신시설 복구	
KT 신사지사	리텐션1팀	545-3669	"	

나. 부서별 지원 담당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연락처(행정)	임무	비 고
총무과	행정6급	윤두현	5161	행정 지원	-
환경과	행정6급	양승원	6231	전기, 가스 복구	-
복지정책과	행정6급	조춘식	5761	긴급 구호	-
교통정책과	행정6급	김길주	6401	교통 통제	-
보건행정과	행정6급	오주환	7011	긴급 의료지원	
건축과	시설6급	강수원	6151	외부전문가 등 현장조사반 구성 등	필요시

제4장 재정투자계획(총괄 및 자체 모두 구비사업)

분 야 별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예산서 페이지)
총 계		34,913천원	122,248천원	
안전관리	소 계	34,913천원	32,248천원	
	건축기계분야 안전점검	11,253천원	8,588천원	P 605
	전기분야 안전점검	2,539천원	2,539천원	P 605
	가스분야 안전점검	3,313천원	3,313천원	P 605
	동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	17,808천원	17,808천원	P 605
	석면해체 및 제거	-	30,000천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등	-	60,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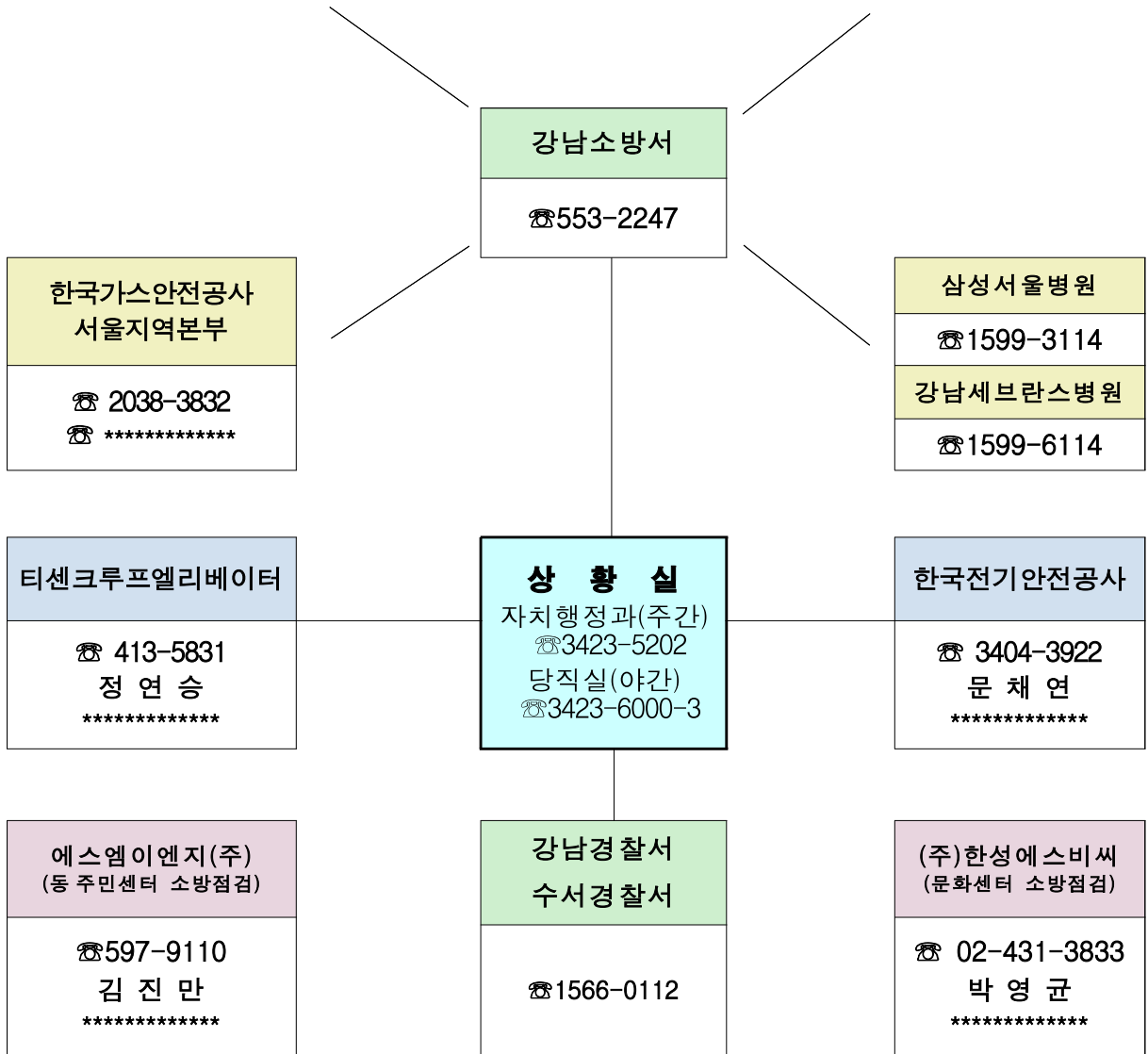
제5장 행정사항

1. 자치행정과 : 재난 및 안전관리 대비 안전점검 계획 수립
2. 재난안전과 : 재난 안전관리 총괄 및 재난대책 업무 지원
3.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각 분야별 안전점검시 청사안내 등 적극 협조 및 지적사항 하자 보수 철저

붙임 : 유관기관 연락망도.

붙임1.

유관기관 연락망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1994호, 2013.8.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재난총괄과) 02-2100-1816

제3장 안전관리계획

-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

~~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013.3.23, 2013.8.6>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